

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
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(김현정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4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7. 17.

발 의 자 : 김현정 · 한정애 · 박상혁
정성호 · 민형배 · 민병덕
이광희 · 모경중 · 정준호
박정현 · 이상식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(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)로 변경하였는데, 아직 일제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.

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

제1조(「상공회의소법」의 개정) 상공회의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1항 중 “대차대조표”를 “재무상태표”로 한다.

제2조(「에너지이용 합리화법」의 개정)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0조제2항 전단 중 “추정대차대조표”를 “추정재무상태표”로 한다.

제3조(「전기공사공제조합법」의 개정)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0조제3항 중 “대차대조표”를 각각 “재무상태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법률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48조(결산보고서의 제출 등)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정기 의원총회 1주 전까지 결산보고서(사업보고서, <u>대차대조표</u> , 손익계산서,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)를 감사에게 제출하고, 그 주된 사무소에도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. ②·③ (생략)	제48조(결산보고서의 제출 등) ① ----- ----- ----- - <u>재무상태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60조(회계 등) ① (생략)	제60조(회계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총칙·추정손익계산서· <u>추정대차대조표</u> 와 자금계획서로 구분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	② ----- ----- <u>추정재무상태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. ----- -----.

전기공사공제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0조(예산과 결산) ①·② (생략) ③ 조합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<u>대차대조표</u> 와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주사무소, 지점 및 출장소에 갖추어 두고 <u>대차대조표</u> 를 공고하여야 한다.	제30조(예산과 결산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재무상태표</u> ----- ----- --- <u>재무상태표</u> ----- -.